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8. 28.(목) 09:2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2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진행에 앞서서 오늘 개의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안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오늘 개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7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

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7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결안건 나> ‘(주)문화방송 협찬고지 법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건’은 본 위원회에서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주)문화방송 협찬고지 법규 위반 이외에 유사한 다른 협찬고지 법규 위반이 있는 것이 파악되어서 그에 관한 조사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함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결안건 나>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고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2014-38-11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번 추진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위원회에 초안을 보고드린바 있고, 5월~6월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고, 지난 8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안 제3조)입니다. 첫 번째,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와 관련해서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안 제5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이용자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료제출 및 보관은 안 제6조인데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명령 관련 기준입니다. 안 제8조~제10조입니다.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징금 관련 기준은 안 제11조~제16조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권한의 위임은 안 제17조로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중앙전과관리소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안 제18조로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5>번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과정 중에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에서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 시 위반행위가 불법 지원금과 관련된 경우 매출액의 2%, 일반적인 영업 위반과 관련된 경우 매출액의 1%로 차등토록 하였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른 대리점·판매점 등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이 있는 후에 법제처 심사가 9월까지 있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회 보고 주요 변경사항 두 번째 '불법 지원금과 관련된 경우 매출액의 2%, 일반적인 영업 위반과 관련된 경우 매출액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를 잠깐 봤는데 본문의 내용을 약간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고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영업위반과 관련된 경우'도 전부 지원금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든지, 이용자가 지원금이 얼마인지 오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원금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영업위반과 관련’ 이렇게 하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도 위반하는 경우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보고 중 변경사항 중에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제19조 같습니다. 규제의 재검토인데 그중에서 조금 단어가 불분명한 것이 제19조제2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긴급중지 명령의 유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의 유형이라는 것이 시행령 안 제5조에 보면 ‘유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해 매년 다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말이 타당성 재검토의 대상인 유형이 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질문한 본문의 단어 문제는 수정하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19조제2항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모법인 단말기유통법 제11조와 시행령 안 제5조와 제19조제2항 간에 서로 문구나 자구 내지는 체계를 다시 검토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것이 10월 1일 시행인데 앞으로 그 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일정상 차질은 없는지, 법제처와는 실무적으로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할 겁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거의 실무적 협의는 다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사항에 나와 있는 표현 ‘일반적인 영업위반’ 이것을 지금 이기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자료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19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의결하고 법제처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능하면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아니면 본문의 설명내용도 사실은 일반사업자나 국민들, 저희 의결안건 본문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것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의결안건 나>를 빼더라도 두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에 사무처에서 2가지가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다시 두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안건 가>를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두 부분은 저희가 다른 안건 처리하는 동안에 그 표현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그 표현을 바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주)문화방송 협찬고지 법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38-112) (상정보류)

다.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2014-38-11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KBS에서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대상 지정을 요청해 왔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KBS의 신청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금년 8월 현재 대성동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51가구가 소지한 수상기 총 61대에 대해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려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성동 마을의 특성은 지정학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한 대성동 ‘민사예규’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영농활동 시간 제약, 어로 및 수렵활동 금지, 야간 통행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방 및 납세 의무는 면제받고 있습니다. 방송법령상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면제제도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 방송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 납부면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면제대상은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44조 각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통위의 지정에 따라 추가도 가능합니다. 면제방식은 ‘수상기 등록면제’는 해당 수상기를 등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반면에 ‘수신료 납부면제’는 수상기 등록대상에는 포함하되 수신료 납부만 면제하는 제도로서 ‘수상기 등록면제’는 주로 수상기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행에 활용되는 수상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신료 납부면제’는 수상기 소지자의 경제적 형편 등 개별 특성을 판단하여 사회적 약자 및 국가보훈자가 소지한 수상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 소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지만 ‘수신료 납부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받으려는 자가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면제를 신청하고 심사받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등록면제와 납부면제의 구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면제 필요성 여부입니다. 대성동 마을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역으로서 해당 주민은 국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감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배려 차원에서 TV수신료 면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면제의 법령상 근

거는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면제대상 중 사회적 약자 및 국가보훈자 소지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 납부면제 또는 국가의 특정목적 수행에 활용되는 수상기에 대한 등록면제에 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면제의 방식입니다. 방송법령상 TV수신료의 면제 취지와 기존 경과 등을 고려할 경우에 수상기 등록면제보다는 수신료 납부면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성동 마을이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주요한 지역이지만 해당지역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가 관련 정책 수행에 직접 활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대성동 주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배려 차원에서는 수신료 면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까지도 대성동 마을은 난시청 지역에 해당하여 수신료 납부 면제를 받았던 지역임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대성동 주민의 거주권 획득과 상실은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수신료 납부면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KBS에 지정 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교통제주 FM방송국 (2014-38-11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제주 FM방송국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다만,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부과한다’입니다. 먼저 허가조건을 말씀 드리면 방송 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 기존 무선국에 혼신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방송국 개국 즉시 제주시 내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신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국 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외국어 방송을 포함한 청취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어 방송 운영 등 세부 방송편성 계획을 마련하고 방송국 개국일 6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청취자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매체다양화 및 라디오 디지털 전환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신규 방송국이 설립되는 지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방송국 커버리지 확대 이전이라도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 교통제주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청법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신청인은 도로교통공단이며, 방송구역은 제주시 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입니다.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위원님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7월 25일과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8개 심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심사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총 671.3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650점 이상을 획득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방송국에 대해서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토록 한 기본계획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기존 방송사업자의 허가신청이라는 점에서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 문제가 없으며, 제주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교통방송 제공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방송구역 커버리지 확대 및 외국어 방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허가조건 부과가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미래부는 방송국 허가에 필요한 법 및 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다만, 혼신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 해소노력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주도 면적의 43%에서 방송수신이 가능함에 따라 방송구역을 일원이 아니고 일부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허가 여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미래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해서 허가유효기간은 전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은 의결주문에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교통제주 FM방송국에 대해서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4페이지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보면 '기술적 능력 등은 문제없으며' 이렇게 심사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표> 다른 배점과 심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수들은 그런 대로 충족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 능력은 70점을 배정했는데 그중에 심사결과가 38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충족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술적 능력이 배점 대비로 봤을 때에는 55%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기술 부분에 대한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방송구역의 커버리지 확대나 난시청 문제에 대한 계획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공단이 제주지역 말고 기존에도 여러 군데 교통방송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경험의 측면에서 능력은 있는데, 다만 사업계획서상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커버리지 측면 때문에 점수는 낮게 받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커버리지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심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가 아니고 제주시 면적의 43%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주파수 자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허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술심사를 했기 때문에 장차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50% 이상 내지는 70% 이상 해서 도권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방송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 논의하셨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내에 있는 방송국 내 방송기지국을 설치해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구역상 2개 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치면 북제주군을 전체로 봤을 때 43%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기지국을 거기에 한 군데 세우다 보니까 기존에 옛날 제주시는 대부분 커버하지만 북제주군을 전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측면에서는 거기와 그다음에 서귀포와 동서남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심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귀포로 곧바로 가는 것보다 동쪽, 서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 측면도 봤고 주파수 영역도 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허가조건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허가조건이 '방송국 개국 즉시 제주시내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국 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버리지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일 좋겠는데 아주 좁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기존 무선국들과의 혼신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사도 그 전파 여건을 알고 제주시를 일원으로 방송국을 허가신청했고, 저희가 미래부에서 기술심사 결과, 제주시 일원을 전체로 했을 때도 혼신이 생겨서 이것을 일부로 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중심부의 43%를 커버하는 것으로 냈지만 동부와 서부 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쪽에 보조국을 설치하면 남쪽에 있는 방송국들과도 혼신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파나 혼신 환경은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허가조건 두 번째 무선혼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군부대의 무선 통신과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두 번째 무선국 혼신원인 제공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방송국 허가할 때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미래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것, 군용이 됐든 어떤 용이 됐든 간에 거기에 존재하는 주파수와 혼신 문제는 전체적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주지역에 하나 허가하는 교통방송국이면 제가 보기에 제주시 일원에 시민들이 교통정보 안내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국제관광도시로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커버리지가 제주시 지역도 43%밖에 안 되면 이것은 절반의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허가조건 두 번째에 되어 있는 기존 무선국에 혼신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된 조항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주파수를 받아서 쓰는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가는 교통 제주 FM방송국 입장에서는 허가받은 주파수 제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단 허가하되,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제주 도민들, 주민들의 교통정보 안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오신 국제 관광객들에게도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커버리지는 제주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기존 무선국의 혼신문제가 어떻게 보면 군부대들도 있기 때문에 경직성일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커버리지를 더 확대하려면 어떤 방안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저희가 개국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수신환경 전체 제주시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국을 세우거나, 주로 동부와 서부지역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도로교통공단은 제주시를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권 전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분이 교통방송의 취지상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서귀포시에 대한 전파여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방통위가 미리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계획은 추후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주도 아까 동부, 서부 커버리지를 확대하려면 보조국을 세워야 하는데 보조국이 또 서귀포시 쪽과 혼신이 일어난다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은 주파수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또 혼신이 생기지 않도록 출력이나 안테나 패턴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허가심사위원장이고 제출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보통 때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이실 때는 질문을 안 하시더니 이것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커버리지가 43%라고 하면서 기술 심사결과 적합하다는 것도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주지역에 FM방송국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속 미래부에 요청을 수년 동안 해 오던 차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검토를 거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방통위도 해야겠지만 미래부에서 정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가용주파수를 찾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교통제주 FM방송국에서는 인근의 군이든 다른 기존의 방송국이든 다른 기관에서 쓰는 주파수와 관련해서 혼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에 허가 받은 무선국의 출력이나 허가제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제주 FM방송국에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해서 보조무선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핀포인트(pinpoint)식의 보조무선국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바로 커버리지를 장차 제주도 전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상태라도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지역주민을 위한 것도 되지만 외지에서 오는 국민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수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방송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출발은 많이 미흡한 상태로 하지만 제주지역이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출발은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커버리지가나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허가조건의 확실성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지난 6월 3일 공포되고 1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각 지역실정과 부합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특수성 및 지역방송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이 지원 목적 및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도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입니다.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구별하기 위해 사업의 내용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위촉입니다. 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지역방송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사전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의견조율 등 업무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방통위원장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인력양성 지원 관련 일부 업무, 그리고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활성화 관련 일부 업무,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후에 곧바로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령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원문을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을 제출하신 허원제 부위원장님과 제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정책과제를 보더라도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과 연계해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이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같은 것들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12월 4일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정책과제와 연계해서 충분히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과제나 법 관련해서 결국은 지역방송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여기에 법과 시행령에도 나오지만 지역방송 발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이 나옵니다. 물론 선언적인 조항입니다만 법 시행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법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지자체와 이러한 법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이 검토하셔서 그런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관련부처에서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고, 또 기금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R&D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불법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최근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처에서는 기금,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이런 부정한 지원이나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는 기금 활용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같은데, 저는 제가 말씀 드린 지금 그런 대책수립의 결과로 관련된 규정이나 법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여기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방통발전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2014-38-111)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아까 처음에 논의했던 <의결안건 가>에 대해서 논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우선 수정된 문구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안건에 저희가 과징금 상한액이 불법지원금과 관련된 경우 2%, 일반적인 영업 위반과 관련된 경우 1%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조문 첨부 1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1%이고 불법지원금에 관한 것이 2%, 그런 표현보다도 법에 위반되는 여러 사항 중에 중대한 것은 2%, 그리고 썩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1%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현을 일반적인 영업행위라고 했을 뿐 입법예고 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2%로, 그다음에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로 차등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표현이 과징금….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실제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기주 위원님 말씀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보도도 되고 또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를 수정한다면 과징금 상한액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경미한 경우 1%로 차등한다고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경우에는 2%, 경미한 경우에는 1%, 또 경미하다고 말하기도 그러는데 ‘중대한 경우에는 2%,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경미하다는 것도 의미가 조금….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니면 중대성에 따라 2%, 1% 차등토록….

○ 최성준 위원장

- 차라리 그것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2% 또는 1%로 차등’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것이 더 낫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두 번째,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시행령 8페이지 제19조제2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의 유형에 대하여 1년 뒤에 재검토’인데, 실제 시행령 제5조에 유형이라는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의 중지예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그 이하 같도록’ 이렇게 고쳐도 되고, 지금 규개위와 이야기해서 고치게 된 이유는 법제처 실무협의 과정에서 저희 고시에 있는 번호이동제한, 신규가입 제한이라는 긴급중지의 유형을 시행령으로 법제처에서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 자체를 규개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규개위가 그것을 이미 고려해서 ‘긴급중지명령의 유형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협의해서 수정했는데 필요하시면 아

까 말씀 드린 대로 '제5조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 수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이렇게라도 하면 제5조와의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제5조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 이기주 상임위원

- 제19조제2항을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5조에 따른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이렇게 하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제5조에 따른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이렇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제19조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내용에 이것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자료니까, 보고 내용 4페이지 제5항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사항 중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액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9조에 대해서는 제2항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이하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확인해 볼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KBS 이길영 이사장 사퇴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엇그제 저희 쪽에 사퇴서가 접수되어서 안행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이고, 저희가 추천할 때는 당연히 의결합니다만 보통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사퇴할 경우 저희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퇴서를, 저희가 추천기관이기 때문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안행부를 거쳐서 임명권자에게 전달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직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퇴라서 KBS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퇴 이유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본인의 발언 이외에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장의 사퇴가 수리되면 우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저는 후임 이사의 추천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최현숙 의안조정팀장님, 제가 알기로 의결사항 중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래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고 위원님과 같은 그런 논의 내지는 질의도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일단 들으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지….

○ **고삼석 상임위원**

- 인사에 대한 방향성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원칙과 기준에 대해 보편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으면 공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런 원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제가 말씀 드리는 중에 원칙에 어긋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어젯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사장은 자신의 이번 결단이 KBS 이사회가 거듭 발전하고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이 확실히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이사장의 발언이 KBS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는 진심이 담긴 마지막 충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1명의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것이지만 이번 보궐이사 추천은 공영방송 KBS의 위상 정립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임이사의 자격요건 관련해서 위원회 내부의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KBS 주변에서는 여러 분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천권자인 방송통신위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영방송 KBS 이사로 부적격하고 부적합한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추천되어서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정된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훨씬 강화된 자격요건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들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적책무 수행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고루 갖춘 분이 추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독립된 규제기구로서 방통위의 위상과 합의제 운영 정신에 부합하도록 외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특히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추천절차가 경시되거나 소홀히 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천권을 행사할 때 그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하게 지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재부에 가서야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종합편성 PP 사업계획서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선 경과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 드리면 2013년 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4사에 대해 2012년도 사업계획서 가운데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과 재방비율 미준수와 관련해서 이를 지키도록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9일 종편 4사에 대해서 각 3,750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편 4사는 지난 6월 20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 대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익히 보도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상 재방비율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없게 만드는 행정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즉각적인 항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재방비율, 사업계획서 준수와 관련하여 방통위에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이 산술적으로 이행불가능한 시정명령이라고 법원이 단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보면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까지 참고해서 판단하면서 이행불가능한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방통위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종편 4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자 승인 시 종편에 부과된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은 승인조건이 아니라 권고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도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볼 때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승인조건은 단순한 권고적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의 승인조건이라고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종료된 (주)TV조선, (주)채널에이, (주)제이티비씨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보면 개국 승인 심사 당시에 비해 보도비율을 높게 계획하고 있는데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종합편성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그리고 개국 이후 콘텐츠에 대한 투자금액 실적이 당초 계획대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계획의 목표치를 여전히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편사업자들이 최초 승인 시 그리고 재

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법이 정한 승인의 조건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법이 정한 승인조건과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공적책무 수행 운운하는 것은 기만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적책무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6개월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 여타 사업계획서는 1년마다 그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종편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로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공적사업자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기구로서 방통위는 종편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반기별로 심사하는 것은 자료가 다 제출되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느 부분….

○ 김재홍 상임위원

- 예를 들면 제3기 방통위의 중점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방송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부여한 조건부, 그것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간점검하는 것을 매우 무게 있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종편 4사에 대해 자체제작과 재방비율, 또 콘텐츠 투자 제작비 이런 것들, 자신들이 약속한 사업계획서나 또는 재허가 심사 때 부여한 조건부,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문제인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행불가능한 것을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매긴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습니다. 잘못 이야기한다면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약속해 놓고 허가를 받은 뒤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행불가능하다고 뺏어버리면 정책기구, 규제기구로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행불가능한 허가조건을 내놓은 것인지,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우리가 잘못된인지, 법원의 판결을 한 번..., 언론들이 한 번 짚긴 짚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소의 변호사 선임도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재허가 조건부나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중간점검하는 문제, 이것이 무력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게 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당장 항소대책일 텐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저는 방통위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다 자체제작으로 채워도 모자란다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전체 시정명령이 불가하다고 판결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송 대비는 저희가 신중히 선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시정명령이 여러 가지 심사 때문에 늦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미 재방비율을 많이 위반한 상태가 되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도 그 재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법원의 1심 판단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저희 부과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할 때 좀 더 신속히 심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또 시정명령 중에도 최종적으로 원래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지만 중간 어느 단계까지 달성하라고 또 시정명령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때 시정명령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3기 방통위 출범 이후에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LGU+의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이번에 종편 4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패소 판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통위의 항소 여부, 또 지난번에 KT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 방통위 제1기, 제2기 때는 일부 행정소송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트렌드를 볼 때 방통위가 앞으로 시정명령을 포함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 법률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처분대상 사업자가 어떤 형태의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전문인력 등등 전반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3기 정책과제에 물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대상사업자들의 이의제기 절차나 의견진술 절차, 대심구조,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심판관 리관, 이러한 부서를 두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라도 이러한 사례를 보고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쟁송에 대비한 사전·사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우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두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시고 지

적하신 대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자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8분 폐회 】